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042

발의연월일: 2024. 11. 29.

발 의 자:김용만・민형배・천준호

염태영 • 박상혁 • 이인영

강준현 · 김현정 · 신영대

임미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권상장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를 증권시장에 상장시키기 위해 신주를 모집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주주들에게 우선 배정하고있지 아니함.

최근 주권상장법인이 물적 분할을 공시하는 경우 주가가 하락하여 소액주주들이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기존 회사의 주 주들은 물적분할로 인하여 신설된 법인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지 못하 여 신설 법인이 상장될 때 그 가치를 공유할 기회가 제한됨에 따라 기존 회사의 주주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

이에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를 증권시장에 상장시키기 위해 신주를 모집하는 경우 모집하는 신주의 100분의 25 이상을 분할되는 회사의 소액주주 중 물적 분할 당시 주식매수를 청구하지 아니한 소액주주들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하는 신주인수권을 부여하여 기존 회사 주주들이 신설 법인의 성장과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주의 권리를보호하고 증권시장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5조의6제5항·제6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5조의6제4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의2. 제5항에 따라 물적 분할된 주권상장법인의 주주(대주주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⑤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 분할(분할합병은 제외한다)을 통하여 설립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분할신설법인"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하려는 경우 「상법」 제418조에도 불구하고 분할된 주권상장법인의 주주(대주주는 제외한다) 가운데 물적 분할 당시 제165조의5제1항에따른 주식매수를 청구하지 아니한 주주에게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을 제1항제1호의 방식으로 배정하여야한다. 다만, 주주 등의 이익 보호,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의 필요성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제5항에 따른 주식의 배정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분할된 주권상

장법인 주주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5조의18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제165조의6제5항을 위반하여 물적 분할된 주권상장법인의 주 주(대주주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주식의 배정을 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적 분할로 인한 분할신설법인의 신주배정에 관한 적용례) 제1 65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이사회가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 분할을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530조의3에 따라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기로 결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① ~ ③ (생	등에 관한 특례) ① ~ ③ (현
략)	행과 같음)
④ 제1항제3호의 방식으로 신	4
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정관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	
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법」 제418조제1항 및 같	
은 조 제2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u><신 설></u>	1의2. 제5항에 따라 물적 분할
	된 주권상장법인의 주주(대주
	주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신
	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
	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
	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⑤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 분할

<신 설>

제165조의18(주권상장법인에 대 제165조의18(주권상장법인에 대 한 조치) 금융위원회는 다음

(분할합병은 제외한다)을 통하 여 설립한 법인(이하 이 조에 서 "분할신설법인"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 에 주권을 상장하려는 경우 「상법」 제418조에도 불구하 고 분할된 주권상장법인의 주 주(대주주는 제외한다) 가운데 물적 분할 당시 제165조의5제1 항에 따른 주식매수를 청구하 지 아니한 주주에게 모집하거 나 매출하는 주식 총수의 100 분의 25 이상을 제1항제1호의 방식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다 만, 주주 등의 이익 보호, 공정 한 시장질서 유지의 필요성 등 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⑥ 제5항에 따른 주식의 배정 방법 · 절차 및 그 밖에 분할된 주권상장법인 주주의 이익보호 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한 조치)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그 법인의 주주총회에 대한 임원의 해임 권고, 일정 기간 증권의 발행 제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그 조치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1. ~ 10. (생략)

1. ~ 10. (현행과 같음) 10의2. 제165조의6제5항을 위반 하여 물적 분할된 주권상장법 인의 주주(대주주는 제외한 다)에 대하여 주식의 배정을 한 경우 11. ~ 25. (현행과 같음)

11. ~ 25. (생략)